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

가. 자격종별 전공 기준

자격종	관련 근거	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(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
중등 학교 정교사 (2급)	-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사범대학 졸업자의 자격기준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- 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-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산업체현장실습을 필 한자 -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산업체현장실습을 필한 자 -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좌동
특수 학교 (중등) 정교사 (2급)	-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사범대학 졸업자의 자격기준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-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- 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【부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이수한 경우】 -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표시과목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006이전입학자 21학점 이상 -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교과교육학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만 이수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교직 부전공 폐지 【부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이수한 경우】 -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표시과목 전공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9학점이상)포함 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좌동
		【복수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이수한 경우】 -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표시과목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교과교육학은 특수교육 과 표시과목에 대한 과목 모두 이수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【복수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이수한 경우】 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8학점 이상 포함 - 표시과목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좌동

자격종	관련 근거	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(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
특수 학교 정교사 (2급) (초등)	■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사범대학 졸업자의 자격기준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-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■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■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2006이전입학자는 전공으로 이수 ■초등교육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미지정으로 해당 없음. - 2006이전입학자는 해당 없음. ■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자 ■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■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■초등교육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■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■성적기준 : 공통사항 참조	작동
특수 학교 정교사 (2급) (유치원)	■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■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■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■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2006이전입학자는 전공으로 이수 ■유치원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2006이전입학자는 해당 사항 없음 ■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■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■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■유치원관련 전공 38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■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■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작동
특수 학교 (중등) 정교사 (2급) (직업 교육)	■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■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■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2006이전입학자는 전공으로 이수 ■직업재활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30학점 이상 이수 +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- 기본이수과목 미지정으로 해당 없음. - 2006이전입학자는 해당 없음 ■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자 ■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■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■직업재활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38학점 이상 이수 +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점 이상 포함 ■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■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작동

자격종	관련 근거	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(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
특수 학교 (중등) 정교사 (2급) (재활 복지)	-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- 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- 특수교육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2006이전입학자는 전공 으로 이수 - 치료교육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미지정으 로 해당 없음. - 교직과목 16학점 이상 이 수한 자 - 2006이전입학자는 20학점 이수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2008년 교직과정 폐지	
유치원 정교사 (2급)	-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사범대학 졸업자의 자격기준 -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- 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-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 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 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 점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작동
영양/ 사서/ 전문 상담 교사 (2급)	-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-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- 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-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 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교직과목 16학점 이상 - 교과교육학은 이수하지 않음 - 영양사면허증소지자 (영양교사에 한함)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 수한 자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은 이 수하지 않음. 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 수한 자 - 영양사면허증소지자 (영양교사에 한함) - 성적기준 : 교직과정 이수 기준 유의사항 참조	작동
부·복수 전공		- 일반교사 ①사서, 영양, 전문상담 포함 ②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자. 단, 부전공은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 - 기본이수과목 5과목 (14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교직) 4학 점 이상 포함 (사서, 영 양, 전문상담 제외)	- 일반교사 ①사서, 영양, 전문상담 포함 ②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. 단, 부전공 제 도 폐지 - 기본이수과목 7과목 (21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학(전공) 9학 점 이상 포함(사서, 영 양, 전문상담 제외)	작동

자격종	관련 근거	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(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	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(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
		■특수교사 ①특수교육관련 전공 42 학점(기본이수 5과목/14 학점이상 포함) 이상 + 자격종별관련 전공과목 42학점(기본이수과목 5과 목 14학점 이상 포함) 이 상 이수한 자 ②교과교육학은 4학점을 이수한자 ③특수교사 자격증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 수한 자 - 복수전공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 점 전체 인정가능 (졸업사정은 별도)	■특수교사 ①특수교육관련 전공 42 학점(기본이수 7과목/21 학점 이상 포함) 이상 + 자격종별관련 전공과목 50학점(기본이수과목 7과 목 21학점 이상 포함) 이 상 이수한 자 ②교과교육학은 8학점 이 상을 이수한 자 ③특수교사 자격증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 수한자 - 복수전공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 점 전체 인정가능(졸 업사정은 별도)	
공통 사항	■교원자격검정령 ■본 대학 교직과정운영규정	■성적기준 - 교직과정 이수자 : 전공 /교직과목의 실점평균 각 80/100점 이상 - 사범대학 : 2005. 9.이 후 일반대학학과에서 복수(부)전공으로 이수 한 과목의 성적이 80/100 점 이상	■성적기준(사범대학포함) -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/100점 이상 - 성적미달의 경우 주· 복수 자격취득 불가 - 모든 이수과목을 포함. 다만, 편입학 이전 대 학 성적은 미포함	■성적기준(사범대학포함) - 전공 실점평균 75/100 이상 - 교직 실점평균 80/100 이상 - 성적미달의 경우 주·복수 자격취득 불가 - 모든 이수과목을 포함. 다만, 편입 학 이전 대학 성 적은 미포함
		【 전공학점 중복인정 】 ■교직융복합전공과 제1전공 간 15학점 중복인정 - 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공통과학교육전공 해당 - 교과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은 제외 ■초특·유평·직재·언치·물 치·재심·재활공학 과에서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와 자격종별(표시과목) 전공 과목을 결합한 경우 특 수교육관련전공학점과 자 격종별 전공학점에 대하 여 15학점까지 중복인정	【 전공학점 중복인정 】 ■교직융복합전공과 제1전공 간 15학점 중복인정 - 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공통과학교육전공 해당 - 교과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은 제외 ■초특·유평·직업재활학과 에서 특수교육관련전공 과목와 자격종별(표시과 목) 전공과목을 결합한 경우 특수교육관련전공 학점과 자격종별 전공학 점에 대하여 15학점까지 중복인정	좌동